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 기획조정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부교수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3><개정 2017.09.25>

②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이 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명 또는 전보를 제청하고자 하거나 조교를 임명하고자 할 때의 그 임명제청, 전보제청 또는 임명의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4.>
2. 총장이 대학원장 임용 제청을 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 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 포상·징계 대상자 심사 및 의결요구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승진대상 교원의 자격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명제청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의거 심의하여야 한다.
 - 가. 교육활동
 - 나. 연구활동
 - 다. 봉사활동
 - 라. (삭제)<개정2007.09.01>
 - 마.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 교원 선정 시에는 교직원인사규정 제10조의 직명별 정원조정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필요에 따라 위원 외에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이상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지원팀장이 된다.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